

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6월 8일 /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6월 8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30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(2026. 6. 18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)

가. 개정사유

- 노인일자리 관련 사항이 「노인복지법」에서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-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구체화하여 노인일자리 질적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(안 제1조, 제2조)
- 노인일자리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 (안 제3조)
-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수행의 체계성과 전문성 확보 (안 제5조)

- 노인일자리 참여자 보험가입 사항은 상위법령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라 시행 중이므로, 조례상 중복규정 삭제 (안 제10조)
-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은 상위법령 「지방자치법」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, 조례상 중복규정 삭제 (안 제11조)

다. 관련법령

-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8조, 제9조, 제23조, 동법 시행규칙 제13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29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경희)

- 본 조례안은 ‘노인일자리’ 관련 사항이 「노인복지법」에서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, ‘노인일자리’ 전담기관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종합검토 결과

-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·보급하고,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같은 법 제8조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의 위탁근거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,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전담기관의 성격과 사업 수행 범위 등은 같은 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,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 역시 상위법에 부합함.
- 앞으로, 포항시는 본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‘노인일자리전담기관’의 운영 및 수행 업무를 구체화하고, 수행기관과 종사자의 처우개선(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)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검토결과,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가. 수정 사유

- 조례 시행 전 기존 위탁 사무 법적안정성 확보를 위한 부칙 신설

나. 수정주요골자

- 기존의 부칙 규정을 부칙 안 제1조로 변경
- 부칙 안 제2조를 신설하여 개정조례안 이전 시행한 위탁 사무의 경우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정함.

포항시 노인일자리 창출·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노인일자리전담기관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시장이 제5조의 사업 등의 사무를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.

- 수정안 조문대비표 -

원 안	수 정 안
부 칙	부 칙
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 <신 설>	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노인일자리전담기관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시장이 제5조의 사업 등의 사무를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.</u>